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3년 8월 16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제7조의2 신설)

- 1) 국제구급대의 임무 규정
- 2) 국제구급대의 운영, 파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3) 세부사항에 대해 소방청 훈령 위임 규정 신설

나. 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제8조의2 신설)

- 1) 국제구급대원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 내용 규정
- 2) 국제구급대의 국외 교육훈련 실시 근거 규정 신설

다. 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제9조 조문변경)

- 1) 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규정에 국제구급대원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13 ~ 12. 25.)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은 법 10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급대를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급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의 제3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①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②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7조의2(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u> ① 소방청장은 법 10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급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 설>	<u>제8조의2(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u>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의 제3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교

	<u>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u> <u>1.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등</u> <u>2.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 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u> <u>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
제9조(<u>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u>) ① 소방청장은 <u>국제구조대원</u>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철수한 <u>국제구조대원</u>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제9조(<u>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u>) ① -----<u>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u> ----- ② -----<u>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119구급과	
연 락 처	(044) 205 - 7631